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1058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4. 1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60,284원 및 그 중 4,909,477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7. 9.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9. 27. 접수 제530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후 합의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김연학

별지